



대한수의사회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제목 「수의사법」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조항 시행 안내

1. 「수의사법」 법률 제18691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합니다.

2. 지난 ‘22.1.4. 일부개정된 「수의사법」(법률 제18691호)의 시행일인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다가오는 ‘22.7.5.(화)부터 수의사는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수의사법」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나.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다.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라.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内部臟器)·뼈·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법에 따라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은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별지11호 동의서 서식의 내용은 필수 항목으로 동 내용을
모두 포함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 사용 가능하며, 차주 대한수의사회 권고 서식 안내 예정)

4.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 시행 이후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이와 관련하여, '22.7.5.(화)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불임의 내용을 살펴주시고, 관련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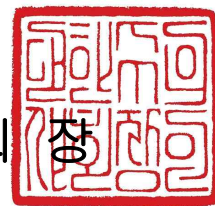
7. 특히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각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동물병원 관련 산하단체만 해당)에서는 1)각 지부 및 단체 홈페이지 공지, 2)회원 대상 문자 및 이메일 발송, 3) 기타홍보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22.7.15.(금)까지 홍보 현황을 중앙회로 공문을 통해 하단의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원을 위한 홍보이니만큼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 회신 양식

일시	홍보방법	현황	비고
ex) 220701	ex) 홈페이지 게시	ex) 조회 수 200회	
ex) 220704	ex) 문자발송	ex) 550명 발송완료	

- 불임 : 1. 개정 「수의사법」 관련 중앙회 안내문 1부.
 2. '22.7.5(화) 개정 「수의사법」 시행 관련 Q&A 1부.
 3.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법정 서식 및 작성 예시 1부. 끝.

대한수의사회



수신처 각 시·도지부장, 각 산하단체장

주임 **김성한** 과장 **신보교** 부장 **김동완** 사무총장 **우연철** 회장 **허주형**

협조자

시행 대수 2022 - 308 (2022. 7. 1.)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5층 / <http://www.kvma.or.kr>
 전화 031-702-8685 전송 031-702-1020 / shkim@kvma.or.kr / 일반

붙임1.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22.1.4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다가오는 7월 5일(화)부터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조의2)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은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동의서 서식 작성예시 별도 첨부)

◆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수의사법」 제13조의2의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内部臟器)·뼈·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다만, 당초 정부에서 입법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사전 설명 및 동의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우리 회의 지속적인 설명 및 건의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회의 동의서 작성이 추 후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선 수의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 조항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수의사법(법률제18691호) 시행일자별 내용 정리

□ 주요내용

법안 내용	처벌조항	적용시기
<p>(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수술, 수혈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하여 진료 전에 설명 및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상황에 따라 이후 설명가능) - 진단명, 필요성·방법 및 내용, 후유증, 부작용, 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관련 근거 : 법 제13조의2</p>	<p>과태료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 관련 근거 : 법 제41조</p>	<p>‘22.7.5</p>
<p>(수술 등 중대 진료비용 고지)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 등 중대진료과정에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추가) 관련 근거 : 법 제19조</p>	<p>과태료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 관련 근거 : 법 제19조</p>	<p>‘23.1.5 (예상 비용 고지) ‘24.1.5 (미고지 시 과태료)</p>
<p>(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비용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 - 게시 금액 초과 징수 금지 관련 근거 : 법 제20조</p>	<p>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기간 정하여 시정명령 - 시정 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동물진료업의 정지+과태료 관련 근거 : 법 제30조</p>	<p>‘23.1.5 (수의사 2인 이상) ‘24.1.5 (수의사 1인)</p>
<p>(진료비용 현황의 조사·분석)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 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 -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근거 : 법 제20조의4</p>	<p>과태료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 관련 근거 : 법 제41조</p>	<p>‘23.1.5</p>
<p>(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을 농식품부장관이 고시 관련 근거 : 법 제20조의 3</p>		<p>‘24.1.5</p>

※법의 적용시기 관련 근거 : 부칙 <법률 제18691호, 2022. 1. 4.>

붙임2. '22.7.5(화) 개정 「수의사법」 시행 관련 Q&A

Q 1.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병원만 수술등증대진료 의무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소·돼지·닭 산업동물병원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병원에 의무가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은 ①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과 ②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을 하는 경우입니다.

Q 2. 법적 서식으로만 동의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가능한 법적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다만, 의사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문구가 반드시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서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적 사항 외에 추가 작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별지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Q 3. 설명 절차와 동의서 작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설명은 구두로 하실 수 있으며, 설명한 주요 내용을 동의서에 작성 후 동물소유자 또는 동물관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으시면 「수의사법」 제20조에 따른 설명 의무는 충족합니다.
- 다만, 혹시 모를 의료분쟁을 대비해 설명 내용을 동의서에 가급적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Q 4. 동의서에 서명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은 인정됩니다.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받으신 후 컴퓨터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Q 5. 응급 상황이라 사전에 설명과 서면동의 절차를 받지 못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나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6. 언제 시행되며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2. 7. 5일 부터 발생하는 수술등중대진료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위반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Q 7. 수술등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도 함께 시행인가요?

아닙니다.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2023. 1. 5.부터 시행됩니다.

붙임3.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법정 서식 및 작성예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연락처
	주소	
수술등중대진료 대상 동물	이름	성별
	특이사항(필요시)	
수의사	동물병원명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설명 및 동의 사항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수의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사로부터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 진료행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작성 예시(예시는 붉은색 음영 부분)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건물 ○○호	
수술등중대진료 대상 동물	이름 뽕뽕	성별 Spayed Female / Castrated Male 등 중성화 여부나 성별을 알 수 있는 표현
	특이사항(필요시) (동물병원 별로 참고하여 작성)	
수의사	동물병원명 ○○동물병원	면허번호 00000 또는 0000
	성명 김원장 (서명 또는 인)	

설명 및 동의 사항

-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동물병원 별로 참고하여 작성**)
-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동물병원 별로 참고하여 작성**)
-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개복 수술 시 복강 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묶고 자르는 술기가 필요한 수술 시 대량 출혈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수술 중·후 출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특이 체질로 마취제에 과민한 경우 수술 중·후 쇼크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노령의 동물은 잠재적인 만성질환(심혈관계 문제) 등으로 수술 중·후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후 스트레스와 수술 중 투여한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설사 및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져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후 이전에 없었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모든 부작용을 다 예상하여 고지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동물병원 별로 참고하여 작성**)
-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기존 신장·간 등의 문제로 마취에서 회복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정밀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존 심장·폐 등이 수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X-ray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취 시 오연성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동물을 반드시 절식시켜야 합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넥칼라 등을 착용시켜 동물이 수술 부위를 핥거나 긁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 후 동물이 수술 부위를 핥거나 긁는 경우 염증이 발생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사의 수술 후 통원 치료 요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이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동물의 체중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식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에 고지했던 방법 외에 수술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했던 금액에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별로 참고하여 작성**)

「수의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사로부터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 진료행위에 동의합니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22년 7월 5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